
대학강의 공개 저작권침해 예방 길라잡이 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ontents

대학강의 공개 저작권침해 예방 길라잡이 20

1 저작권자의 허락과 관련된 질문 1

2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된 질문 14

3 저작권 계약과 관련된 질문 21

4 저작권과 관련된 기타 질문 24

1. 저작권자의 허락과 관련된 질문

Q1

교수가 공개할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헌, 동영상, 음악, 사진 및 이미지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에 각 자료의 저작권자들로 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요?

 답 변

교수가 단지 수업시간에만 활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료를 이용할 수 있지만, 웹사이트 등에 상시 공개까지 할 목적의 강의 콘텐츠라면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용되는 내용이 일반적인 인용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해 설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단지 수업만을 위해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경우라면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해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여러 가지 문헌, 동영상, 음악, 사진 및 이미지를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업 목적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나 CD-ROM 안에 수록되는 형태로 공개하고 배포할 강의 콘텐츠라면 해당 강의 콘텐츠 안에서 사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일 경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강의 콘텐츠 안에서 이용되는 내용이 일반적인 인용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면 저작권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으로 적용 받을 수도 있다. 여기서 인용이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저작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반드시 원작품을 그대로 활용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일부 변형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교수가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여러 문헌, 동영상, 음악, 사진 및 이미지 등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관행에 합치되게 이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관행에 따라야 하며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Ⅰ 관련 법령 Ⅰ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

저작권법 제28조

Q2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전시물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에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요?

 답 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전시물을 촬영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에 이용할 수 있지만, 전시물에 대한 촬영은 해당 전시물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관련 지침을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해 설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전시물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에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저작권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사전 협조를 얻어야 할 때가 있다.

전시된 저작물에 대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된다. 따라서 해당 전시물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면 이를 촬영하기에 앞서 복제권을 가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물 외벽이나 야외전시장과 같이 일반 공중에 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일반적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처럼 일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전시 공간에서는 그 전시물의 촬영에 대한 정책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많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전문적으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지 않고 작품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관람객의 촬영을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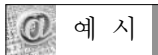
하였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인도 고성능 디지털 사진기나 동영상 카메라로 전문가에 못지않은 영상물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대다수 박물관이나 사진관에서 사전 허락 없이 촬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행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저작권법은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고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전시물을 촬영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관리차원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 저작권법에서 이것이 허용된다고 할지라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해당 전시물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관련 지침을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Ⅰ 관련 법령 Ⅰ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예 시

Q3

공연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에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요?



답 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연을 촬영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인

경우에는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고 촬영한 공연 영상물을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에 사용하여야 한다. 수업목적으로 개발된 강의 콘텐츠라 할지라도 그 강의 콘텐츠의 이용이 해당 공연 영상물을 촬영하여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시장수요를 대체할 정도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촬영된 공연 영상물을 활용할 수 없다.

해 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으므로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입장료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공연료를 받는 공연의 경우에는 해당 공연을 촬영하기에 앞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공연을 촬영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 허락 없이 촬영된 영상물을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에 사용할 경우 사회적 또는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촬영한 공연 영상물을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에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공연을 촬영한 것이 비디오로 판매되고 있거나 일정한 금액을 받고 다운로드 하도록 되어 있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개발에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가입된 베른 조약에 따라 수업목적이라도 그 저작물의 시장수요에 대체될 정도의 이용은 위법이 되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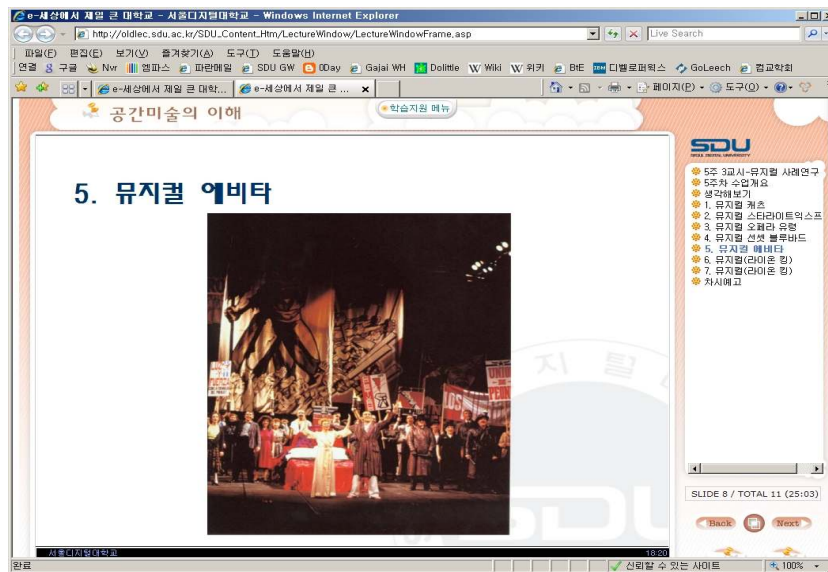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예 시

아래 온라인 강의 콘텐츠는 “공간미술의 이해”라는 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써, 5주차 3교시에서 “뮤지컬 사례 연구”라는 내용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의 공연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뮤지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뮤지컬의 공연 장면을 스틸 컷으로 소개하면서 설명하는 정도는 실제 공연 내용을 전부 보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수업목적상 활용되는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뮤지컬의 공연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공연장에서 직접 촬영을 하고자 한다면, 공연장에서의 촬영에 대한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공연이 한참 진행 중인 공연물의 경우에는 영리적인 손실을 우려하여 공연이 종료될 때까지 공연에 대한 촬영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공연물의 저작권은 보통 제작사가 가지고 배우는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따라서 공연을 기획하고 만든 공연 제작사를 찾아가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촬영이 가능한 시간에 촬영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 공연물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들)로부터도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Q4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에 오래된 영화나 사진을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요?

@ 답변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오래된 영화나 사진을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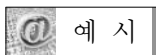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오래된 영화나 사진이라면 일단 그 보호기간(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이미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보호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누구든지 이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

이 종료된 오래된 명화나 사진을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현대 회화나 사진의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고 공정한 관행에 따라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업목적 외에 웹사이트 등에 상시 공개까지 할 목적의 강의 콘텐츠라면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위 강의는 서양미술사를 가르치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로써 1600년대 그려진 베르메르의 명화를 사용하여 네덜란드의 인물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래된 명화는 이미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상태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온라인 강의 콘텐츠에서는 물론 다른 저작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Q5

허리우드 영화와 같은 상업용 영상자료의 일부를 활용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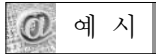
 답 변

수업 목적으로 만 활용된 강의 콘텐츠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업용 영상자료를 이용할 수 있지만,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 설

허리우드 영화와 같은 상업용 영상자료의 일부를 활용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교육기관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해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수업목적 외에 웹사이트 등에 상시 공개까지 할 목적의 강의 콘텐츠라면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	



위 강의는 스크린중국어를 가르치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로써 상업용 중국영화의 일부를 발췌하여 대화내용을 기초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표된 영상 저작물의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교육기관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해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일 시중에 위 중국영화를 사용하여 중국어를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라면, 개발하고자 하는 강의 콘텐츠에서 해당 중국 영화의 사용은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Q6

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도입부나 엔딩부분에 배경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요?

 답 변

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도입부나 엔딩부분은 수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배경음악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해 설

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도입부나 엔딩부분은 수업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특별하게 제작된 강의 콘텐츠의 도입부나 엔딩부분의 경우에 수업과 연관을 가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배경음악을 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도입부나 엔딩부분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

Q7

교수가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제작한 자료(글, 사진, 그림, 이미지, 음악, 동영상 등)들을 모아서 사용하려고 경우에도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요?

 답 변

수업목적으로 활용할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제작한 자료들을 모아서 사용할 때 학생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해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 설

교수가 수업목적으로 활용할 강의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들의 글이나 사진 그림이라 하더라도 보호되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자인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수업목적으로 활용할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제작한 자료들을 모아서 사용할 때 학생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해당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교육기관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해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

Q8

제3국어로 만들어진 원작이 영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강의 콘텐츠로 개발하려고 한다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답 변

수업목적으로 활용할 강의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에는 원작의 저작권자나 영어로 번역한 번역자의 허락 없이 제3국어로 원작이 따로 있는 영어 번역물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 해 설

독일어나 러시아와 같이 제3국어로 만들어진 원작이 영어로 번역된 경우, 그 영어 번역물은 원작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된다. 이러한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독립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한다. 즉,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갖는 모든 권리를 번역자로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업목적으로 활용할 강의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3국어로 만들어진 원작을 번역한 영어 번역본을 한국어로 번역하고자 한다면, 제3국어 원작의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영어 번역본 번역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업목적으로 활용할 강의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그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작의 저작권자나 영어로 번역한 번역자의 허락 없이 제3국어로 원작이 따로 있는 영어 번역물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36조

Q9

책 표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스캔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에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답 변

수업목적으로 활용할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책 표지나 특정 상품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 설

수업목적으로 활용할 강의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책 표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스캔하여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위배한 것이 된다. 하지만, 교수가 수업목적으로 활용할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책 표지나 특정 상품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교육기관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해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

2.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된 질문

Q10

사전에 출판사로부터 사용허락을 받고 교재에 게재된 문헌, 사진 및 이미지를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에 사용한 경우에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답 변

수업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강의 콘텐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나 수업 외에 웹사이트 등에 상시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출판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교재에 게재된 내용들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해 설

출판사가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교재에 대한 저작권은 별도의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해당 교재를 저술한 저자가 가진다. 하지만, 교재의 저자와 출판사간에 저작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을 출판사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출판사가 된다. 그러므로 저작권을 출판사가 가진 교재에 대해서 출판사로부터 사용허락을 받고 교재에 게재된 문헌이나 사진 이미지를 온라인 콘텐츠 강의 콘텐츠 개발에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작권을 출판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교재에 대해서 출판사로부터 사용허락을 받고 교재에 게재된 내용들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업목적으로 활용할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

는 없으며, 다만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교육기관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해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Q11

교수가 외국어로 된 외국서적이나 외국자료를 번역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활용한 경우에도 저작권이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답 변

교육목적상 필요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그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이나 저작인격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해 설

교육목적상 필요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그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6조) 따라서 저작물을 요약하거나, 외국어로 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를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 교육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근거로 이

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1호)

한편, 이렇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저작권 제37조)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저작권법 제36조

Q12

교수가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자료에 대해 인터넷 링크를 거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요?

@ 답 변

링크를 마우스로 클릭했을 경우 링크되는 타킷 사이트의 홈페이지 내용이 그대로 보여지는 직접 링크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웹사이트나 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이용자가 링크된 사실을 알아차릴 수 없도록 링크되는 임베디드 링크나 인라인 링크, 프레이밍 등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 해 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나 온라인 강의 콘텐츠 상에서 마우스로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링크에 연결된 홈페이지의 내용이 그대로 다 보여지는 직접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링크 중에서도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나 인라인 링크(inlining link)와 같이 웹사이트나 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이용자가 링크 제공자의

웹페이지나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열람했을 때 이용자의 개입 없이 해당 링크가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이용자 입장에서 링크된 정보의 소스는 물론 링크가 되어 있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들어진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아울러 브라우징을 하면서 링크되는 사이트의 주요 내용만을 나타내고 그 주변의 광고나 홍보 기타 알림 내용들을 제거하여 자신의 것으로 대체하는 이른바 프레이밍도 같은 이유에서 침해도 판시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다른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소개할 때는 링크된 내용이 내가 제작한 콘텐츠 안에서 자동적으로 보여 지도록 하기 보다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 이용자가 해당 링크를 마우스로 직접 클릭하여 참조할 수 있게 링크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그 홈페이지 운영자와 협의를 거친 후 링크를 걸어야 할 것이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18조

Q13

인터넷에서 수집된 이미지나 사진을 수정·가공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활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요?

㉠ 답 변

수업목적상 필요한 내용이어서 온라인 강의 콘텐츠 내부에서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예시를 나타낼 목적으로 수정·가공되어 사용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수업목적상 관계가 없이 단순히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외형적 모습을 꾸미거나 장식할 목적으로 타인이 만든 이미지나 사진을 수정·가공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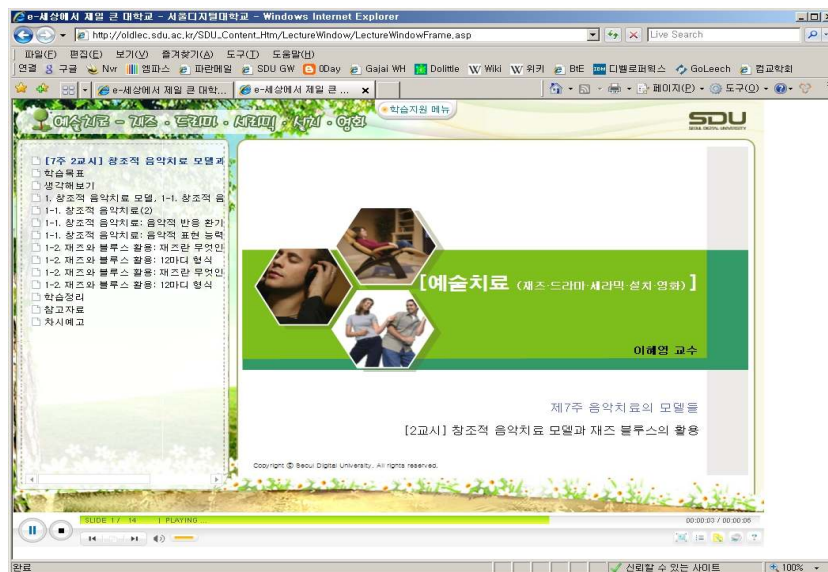
@ 해설

인터넷에서 수집된 이미지나 사진을 수정·가공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활용할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인터넷에서 수집된 이미지나 사진이 수업목적상 필요한 내용이어서 온라인 강의 콘텐츠 내부에서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예시를 나타낼 목적으로 수정·가공되어 사용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수업목적상 관계가 없이 단순히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외형적 모습을 꾸미거나 장식할 목적으로 타인이 만든 이미지나 사진을 수정·가공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I 관련 법령 I

저작권법 제25조

@ 예시



※ 위 자료 중 ‘이혜영 교수’라는 실명부분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임.

위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살펴보게 되면, 강의내용과는 별개로 배경에 꽃과 나무를 그린 배경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 강의 콘텐츠를 장식할 목적으로 사용된 배경 이미지는 수업목적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 이미지는 직접 디자인한 이미지나 정식으로 라이선스 구매를 한 후 사용하는 이미지가 아니라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Q14

교수가 타인이 만든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살펴보고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강의 콘텐츠 내용을 구성하고 개발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답 변

타인이 만든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살펴보고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강의 콘텐츠 내용을 구성하고 개발하였을 경우, 내용상 유사성이 발견되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 해 설

어떤 한 교수가 개발한 온라인 강의 콘텐츠가 내용상 제3자가 개발한 온라인 강의 콘텐츠와 종속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발견 될 경우, 해당 교수가 제3자가 개발한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본 사실이 입증되고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 아니라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또한 내용상 전체적인 스토리 전개가 같으나 등장인물이나 등장요소의 이름만 단순히 다른 경우 “비문자적유사성”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교수가 타인이 만든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살펴보고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강의 콘텐츠 내용을 구성하고 개발하였을 경우, 내용상 유사성이 발견되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16조

Q15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저작도구를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답 변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저작도구는 교육기관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사용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

@ 해 설

저작도구를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수업목적과는 상관없이 불법복제물을 수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복제물 자체가 이미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자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따라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저작도구는 교육기관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사용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 따라서 저작도구를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한 저작도구를 사용하여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16조

Q16

민간 자격증 취득을 주제로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 출제된 문제들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답 변

수업목적상 기 출제된 문제들을 발췌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해 설

민간 자격증 취득을 주제로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 출제된 문제들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32조에서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 콘텐츠 안에 강의 수강자의 학습상태를 평가할 목적으로 기 출제된 문제들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5조 2항

저작권법 제32조

3. 저작권 계약과 관련된 질문

Q17

교수가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일부 내용을 조교나 제3자에게 맡겨 개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가요?

@ 답 변

조교나 제3자가 교수자의 저작활동을 단순히 돕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조교나 제3자가 저작권자가 되지못하므로 별도의 저작권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전체 강의 내용 중 특정 부분의 교수 내용을 교수가 전혀 기획하거나 설계하지 않고 전적으로 조교나 제3자에게 맡겨 개발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조교나 제3자와 별도의 저작권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 해 설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경우, 교수자가 강의 내용을 기획하고 강의에 사용하는 자료도 교수자가 작성한 것이라면 교수자가 저작권자가 된다. 여기서 단순히 강의를 촬영하거나 교수자가 만든 자료를 단순히 디지털화한 자는 교수자의 저작활동을 돕는데 불과한 자로서 저작자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교수가 온라인 강의 콘텐츠에 들어갈 일부 자료를 조교나 제3자에게 맡겨 입력하거나 그리도록 한 경우에는 조교나 제3자와 별도의 저작권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교수가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전체 강의 내용 중 특정 부분의 교수 내용을 전혀 기획하거나 설계하지 않고 전적으로 조교나 제3자에게 맡겨 개발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조교나 제3자의 온라인 콘텐츠 개발활동은 저작활동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특정부분의 개발을 담당한 조교나 제3자는 해당 온라인 강의 콘텐츠에 대해서 교수와 함께 공동저작자가 된다. 또한,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체 강의 내용 중 특정 부분의 교수 내용의 개발을 담당한 조교나 제3자에게 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교수가 일정한 보수를 지원하였다 할지라도 교수와 조교 또는 교수와 제3자간에 별도의 저작권 양도양수계약을 맺지 않는 한,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교수의 단독 저작물이 되지 못 한다. 따라서 교수가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단순 자료 입력이 아니라 일부 내용을 조교나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개발하는 경우에 교수가 해당 콘텐츠에 대한 단독 저작권을 가지려면 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일부 개발을 담당한 자와 저작권 양도양수 계약을 맺어야 한다. 만일 온라인 강의 콘텐츠의 일부 개발을 담당한 자와 저작권 양도양수 계약을 맺지 않으면, 해당 온라인 강의 콘텐츠는 공동저작물 또는 결합저작물이 되기 때문에 이후 해당 온라인 강의 콘텐츠에 대한 개정이나 수정을 할 때마다 공동저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조 제2항

Q18

교수가 자신이 저술한 교재를 특정 출판사와 독점 출판 계약을 맺은 후, 해당 교재에 기술된 내용이나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해도 되나요?

① 답 변

교수와 출판사간의 출판 계약 내용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교수는 자신이 저술한 교재를 특정 출판사와 독점 출판 계약을 맺은 후에도 해당 교재에 기술된 내용을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해 설

교수가 특정 출판사와 독점 출판 계약을 맺고 교재를 저술하였다 할지라도 해당 교재에 대한 저작권은 교수에게 있으며, 독점 출판 계약을 맺은 출판사는 해당 교재에 대해서 저작권재산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출판권만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7조는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생할 권리”를 ‘출판권’이라고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은 종이 매체의 출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CD나 DVD를 사용한 오프라인 출판이나 온라인 출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수는 자신이 저술한 교재의 내용을 다른 출판사를 통해 종이 교재로 출간 할 수 없을 뿐이지 같은 내용으로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수와 출판사간의 출판 계약 내용에 온라인 강의 콘텐츠와 같이 다른 형태의 저작물로 교재의 내용을 게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경우에는 자신이 저술한 교재의 내용을 활용하여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없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57조

4. 저작권과 관련된 기타 질문

Q19

교수가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답 변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표현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 해 설

학교 교육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표현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1호

Q20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해당 강의 콘텐츠 안에 명시해야 하나요?

 답 변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해당 강의 콘텐츠 안에 명시해야 한다.

 해 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해당 강의 콘텐츠 안에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